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1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196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가소33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 선고 2020. 11. 10.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가소33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02,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원고는 2017년경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7485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같은 법원 2017드합374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경 총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2018. 6. 30.인 양도소득세 38,846,380원 및 그 약 10%인 지방소득세 3,884,630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이혼소송 중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합계 42,731,010원(=38,846,380원+3,884,630원)의 조세채무가 분할대상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11. 1. 위 사건에 관하여, 각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본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하면서 위 조세채무를 피고의 분할대상재산 중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공무원인 원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피고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2,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212,446,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50,000,000원, 과거양육비 6,440,000원, 형사 합의금 20,000,000원을 각 공제하여 피고에게 126,787,377원(그 각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것이다)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의 이행을 마쳤다.

마. 한편 그 후 충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비과세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38,846,380원 및 지방소득세 3,884,630원의 조세채무를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에게 그 이행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조세채무 중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정한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로 분배받아야 할 55%에 해당하는

23,502,056원 $[(38,846,380\text{원}+3,884,630\text{원})\times 55\%]$ 2)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3,502,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혼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었던 조세채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사건 중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사건이 당사자 간의 쟁송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처리되는 것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양자택일적 해결을 피하고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위 조세채무는 이 사건 이혼판결 당시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 심리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고,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존재 여부와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채권 또는 채무인 경우 변론종결 후 채무의 면제, 채권의 시효소멸 등 종국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는 변론종결 당시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모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
-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충주세무서장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이혼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확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다 갚는 날까지 연 15%"는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조우연

판사이재석

1)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02,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지만,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한 사실을 간과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식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면 23,502,055.5원이나 원고는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23,502,056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